

서울특별시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 전화 (02) 739-7146 / 전송 734-5243
 처리부서: 예방과 (3층) 담당 임정현

문서번호 예방 11060~547
 시행일자 1996. 4. 9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소방본부장	전결	
예방 과장		법무담당관
예방 계장		기획계장
기안	임정현 卞	홍보계장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예방13810-106 ('96.1.20)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심의회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시보와 시민신문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화재예방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근간 소방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96. 5. 31까지 소방본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6

< 의견 제출 양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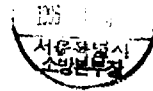
관련조항 및 내용	의견	사유

첨부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 외 협회 및 단체 (연명부 참조)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명의 : 소방본부장

제목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6. 5. 4¹⁰까지 소방본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

관련조항 및 내용	의견	사유

첨부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 1부. 끝.

수신처 : 서국 01-13, 서본부 01-04

(제 4 안)

수신 공보관

발신명의 : 소방본부장

제목 시보 및 시민신문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문을 별첨과 같이 시보와 서울시민신문에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4부. 끝.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조철
서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

048

작성일자	2006. 4. 9	121
담당자	정리정사서정	정부담당
	전본	한

공 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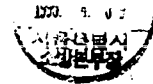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고 제1006-100 호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원
본
조
의
한

1. 개정이유

최근 노래방등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족으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제한 필요성이 요청되어 개정하려
는 것임

은 술 및 관련규정을
거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을 확대함.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난관주점, 세탁소, 학원, 의원, 독서실, 전시장, 노유자시설 () 격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로 무향층 또는 지하층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5월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소방본부장(참
조 : 예방과장, 전화번호 730-71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 민 이부와 그 ~~이부~~ → 사무
나.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